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책회의

일시 : 4월 4일, 오후 6시

장소 : 여성평화의 집

참석자 : 법률전문위원회 / 이장희, 김찬규, 정인섭, 박원순
 기획위원회 / 이호재, 윤정옥, 지은희, 정진성, 이미경, 권희순

순서 (사회 / 지은희 기획위원장)

- 주요활동 보고 : 1) 2월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
 2) 고소, 고발장 보고
- 정대협 7가지 요구 진행상황 보고
- 앞으로의 정대협 활동방향 논의

✓ 법무장관 청문회
 ✓ Christian Academy 피해학생
 ✓ 150명 등등 (un)명들)
 하비이커서
 계속 연락해줘라.
 ✓ 대법원장 청문회
 유족회 + 피해자 + 피고자 → 피상해자 요구.

⊗ 한국전쟁공약 - CCJ -
 V도 -
 ⊕ 38선이상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없는 한 계속 요구
 기조는 계속.

★ ILO 강제노동협약 51조
 ★ 1503조 강제 Communication
 ★ New York 7조 강제 노동 방지
 ★ 강제 노동 방지 - 노동권 보장
 ★ New York 4조 강제 노동 방지
 ① 강제 노동 금지
 ② 강제 노동
 ① 대법원 청문회 - 피해자, 목격자.
 ② 서울지방법원 - 피해자.
 ★ 미국 - Bia Watch 피해자
 ★ 103명 포함 피해자
 ★ T. net

제 50차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참가 중요사항 보고

회의기간 : 1994. 1월 30일 - 3월 11일

참가자 : 신혜수, 김은경(2월 14일 - 26일 참석)

1) 의제 17 (인권소위의 보고)에 대한 토의: 2월 15-16일.

- 한국 정부발언 (2월 15일): Linda Chavez의 임명지지, 임무수행에 협조하겠다.
- 북한 정부발언 (2월 16일): 군위안부, 강제이주 등에 대해 진상규명, 처벌, 배상 이 루어져야 함.
- IFOR(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2월 4일자 written statement)
: 처벌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
- IADL(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북한종태위, 2월 15일)
: 진상조사, 배상, 처벌 요구.
- TWMAEW (Third World Movement Against Exploitation of Women: 필리핀 단체,
2월 16일) : 국제재판소에서의 범죄자 처벌, 희생자를 위한 국제중재재판소의 설치,
사망자를 위한 4조엔 지불등 주장.
- WCC (정대협, 2월 16일)발언 : 검찰 고발장접수 거절, 독일.화탄이 한것처럼 처벌
요구, Linda Chavez의 임명 승인할 것, 일본 유엔안보리상임 이사국 가입 반대.
- Liberation (제일교포 강제연행 진상조사단, 2월 21일): 의제 17에서 발언 못하고,
의제 11(Further Promotion and Encouragement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에서 발언. Higher Commissioner 임명,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임명, 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를 새로 설
치,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설치등 4가지 제도 주장.
- 일본정부는 응답 없었음(본국 지시였다 함).

2) 인권위원회내의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사안

* Linda Chavez 임명 승인 건

- 소위원회로 다시 보내져서 1년 연기
- 이유 : 미국이 소위원회 영국인 전문가의 Humanitarian Intervention에 관한 연구를
저지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의 연구가 너무 많다고 문제제기.
- 미국정부대표가 Linda Chavez에게 전화하고 양해구함. 한국정부에도 이해 요청.
8월의 소위원회때까지 Working Paper를 내면 소위원회에서 priority가 1차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득.

*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임명안 통과

- S.R.의 임무 :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결과,해결책까지 제시, 기간은 3년.
- Special Rapporteur의 임무중 군위안부 문제가 포함되는 것을 모두가 확실히 인식하
도록 로비활동.

* Mr.Guisse 와 Mr.Joinet의 특별보고서 "인권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 문제에 대
한 보고서(Progress report on the question of the impunity of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채택

3) 국제중재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사무총장 방문 면담

(The Hague, Peace Palace, 3월 1일 오전 9시 30분-10시 50분)

- 국가와 국가, 또는 국가와 다른 나라의 국민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
현재 미국과 이란간에 4천건이 계류중에 있음.
- 기존의 협약이 없는 경우 compromise를 작성해서 내도록 되어 있음.
- 피해자가 여럿이므로 정대협이 대표해서 할 수 있음.
-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중재자 (1명-3명), 정대협에서 지정하는 동수의 중재자,
그리고 ICA가 지정하는 동수의 중재자로 재판부를 구성.
- 중재자는 ICA소속 판사 250명(여성은 8명)중에서 선택해도 되고 외부에서도 가능.
- 변호사를 꼭 선정해야 하고, 재판 자체에 비용은 안드나 법정사용료, 실무자,
중재자 등의 인건비 등이 관례. 사안의 성격으로 인해 융통성이 있음.
- ICA의 결정은 final & binding.

4) 기타

- 7월/8월경 유엔 인권위원회 프로그램으로 아시아지역의 regional rearrangement를
주제로 서울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 국가대표이외에 NGO도 참여시킬 것으로 전망.
- 9월에 4-5일 일정으로 World Congress on Labor Laws and Human Rights가 서울에서
개최됨. 참석자중 인도 대법원장을 지낸 Bagwati 판사(73세)가 참석예정. 현재 ILO의
전문위원. 여성인권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했고, 비엔나 대회시 Global Tribunal에
서 판사를 맡았던 인물. "Women and Human Rights", "Women and Development", ILO
등을 주제로 강연할 수 있음.

정대협 7가지 요구 진행상황 보고

7대 요구

1. 정신대범죄 진상공개 2. 범죄인정 3. 범죄사죄 4.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
5. 추모비건립 6. 역사교과서 명기, 교육 7. 책임자처벌

7대 요구	진행 상황	더 요구해야 할 사항
1. 위안부 범죄의 진상의 전모를 공개하라!	* 일본정부 태도변화 . 그런 일 없었다며 부인 . 있었다. 민간인이 한 일 . 국가, 군 개입인정 . 일본정부 1차 진상조사발표(92.7.6) . 강제성 부인 . 일본정부 2차 조사발표(93.8.4) . 강제모집의 주체가 민간업자로, 군, 관헌의 주도적 관여 부인하는 등 부분적 강제성 인정 * 민간인 활동 . 위안부문제에 일본군, 국가의 주도적 관여, 명령계통 조사	* 일본정부에 대한 요구 . 위안부 총 숫자 공개 . 정책입안자, 관리, 운영 등의 명령체계 공개 . 위안부 총 숫자 공개 (93.5.12) 29136
2. 위안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라!	. 위안부 제도 사실인정 . 그러나 '위안부' 제도가 전쟁범죄임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전쟁범죄 인정
3. 위안부 범죄사실에 대해 사죄하라!	. 90년 5월 노태우 방일시 일천황 "통석의 업" . 92년 1월 8일 미와자와 수상 방한시 "반성과 사과의 뜻" . 93년 11월 5일 호소카와 수상 방한시 "진사"표현 * 신문자료 참조	✓ 국하러이름은 ✓ ✓ 개인에게 사죄 ✓ 91.11.11
4. 법적으로 배상하라!	. 일본정부 입장 : 배상할 수 없다. 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난 일이다. *. 현재까지의 의견들: 1) 태평양유족회에서 소송중인 위안부 피해자 1인당 금액 : 2천만엔 2) 정인섭 : 일본정부의 피해자 배상을 위한 특별자금의 규모(안) 가) 소송제기중인 개별피해자 소송배상금 2천만엔 x 15만명(추정)	* 합당한 배상액수 기준 마련

합 3조엔을 총책임금액안

: 1인당 2천만엔은 현 한국에서 20대 초반의 여자사망시 약 1억원 정도의 배상금이 지급되는 현실과 크게 어긋나지 않음.

나) 일 전후보상제도내에서 유족원호법상의 피해자배상기준에 따른 지급안

: 유족원호법상 군복무사망자에 대한 유족연금 제 1순위자에 대한 지급액을 피해자 배상의 기준으로 삼는 방안: 동법 실시 이후 현재 까지 40여년간의 누적급부액에 년도별 연체이자를 가산, 군위안부 특수사정에 따른 위자료 500만엔 추가, 이를 전체인원수로 곱한 금액

3) 안상운 : 유족회 소송의 배상금액 2천만엔은 부적합. 일본현지돈으로 보상액 계산해야 한다. 한국돈으로 환산한 금액 2천만엔은 부적합
· 개인당 배상액은 1억원이 아닌 1억엔이어야.

4) 반보벤 :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의 형태
현금과 비화폐적인 배상-진실규명및 사실확증, 침해의 책임을 공적으로 인정, 책임자 재판, 희생자및 증언자들을 보호, 기념물 건립, 희생자들의 사후복지를 위한 기관설립, 희생자돕기위한 인원양성, 다음과 같은 조치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할 것(안보군대를 민간의 권한하에 둠으로 면밀히 통제, 군사재판의 권한제한, 사법권의 독립강화, 법률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 억류등록제도에 선, 안보군대와 법집행공직자들에게 인권교육제공)

5. 희생자를 위하여 추모비를 건립하라!

6. 역사교과서에 명기하여 가르치라!

1994년부터 7개 교과서에서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다루고 있음.(별지 참조)
-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범죄성 성격등의 사실 빠짐

. 단순한 '종군위안부' 말의 수록보다는 그 문제의 성격규정이 있어야 하고, 전쟁범죄라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한국역사교과서 개정도 같은 차원에서 요구

7.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일본검찰, 정대협과 피해자가 제출한 책임자처벌 고소.고발장에 대해 시효지남 등의 이유로 접수거부